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적립금 운용 지침

제정 2022. 6.22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여 현재 및 장래의 퇴직급여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적정 수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확정급여형 퇴직급 여에 적용한다.
 - ②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및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
- 제3조(적립금 운용의 목적) 적립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.
 - 1. 연금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향후 연금부채의 지급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것
 - 2. 퇴직자 발생 시 원활한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
- 제4조(퇴직급여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와 구성) ①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적립금 운용위원회

-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②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하며, 위원 장은 퇴직급여 담당 이사가 된다.
-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5조(위원회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.
 -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, 이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전체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6조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- 1.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적립금 운용계획서
- 2. 그 밖에 퇴직급여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심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제7조(적립금 운용계획서의 작성) 적립금 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1. 퇴직급여 적립금의 목표수익률
 - 2. 자산배분정책 및 운용 방법
 - 3. 적립금 운용성과의 평가
 - 4. 그 밖에 퇴직급여제도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
- 제8조(목표수익률) 지침 제7조 1호의 목표수익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의 최근 3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월간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, 위

원회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.

- 제9조(자산배분정책의 심의 및 조정) ①자산배분정책에는 목표수익률을 달 성하기 위한 투자 자산별 투자 한도를 백분위로 설정한다.
 - ②적립금 운용부서는 경제 상황이나 시장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운용성과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배분정책 상의투자 한도를 벗어나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적립금 운용부서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또는 경제 상황의 급변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배분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10조(유동성 자산)①적립금 운용부서는 향후 1년 이내에 발생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정책에 적정 유동성 자산 비율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유동성 자산은 5일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하며,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자산으로 운용한다.
- 제11조(운용방법의 산정) ①투자 대상 자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내에서 정하도록 하며 관련 법 령에서 규정한 투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적립금 운용부서는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이 파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평가한 후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위원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정량적 측

- 면(기간수익률, 총자산금액, 업종별 투자비율, 총보수비용 비율 등)과 정성적 측면(운용계획, 투자전략 등)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배분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. 이때 실적배당형 상품은 성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발생 가능한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.
- ④적립금 운용부서는 적립금의 수익성·안정성 제고 및 투자대상 자산군 다변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1개 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규 운 용방법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하고,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운용성과의 평가) ①운용성과는 제8조에 따른 목표수익률과 자산별수익률 및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되, 운용방법별 특성에 따라 중장기 수익률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.
 - ②위원회는 운용성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운용으로 인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된 경우에는 운용상품 변경 등 적 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.
 - ③위원회는 적립금 운용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운용성과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- 제13조(적립금 운용담당자의 의무) ①적립금 운용담당자는 관련 법령과 이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며, 적립금 운용에 있어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적립금 운용담당자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, 퇴직급여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과 차등하여 특별히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부 칙<2022.6.22.>

이 지침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